## 법령 I -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

##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(시행령 포함)

- 문 1.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「공무원 인재개발법」또는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③ 「공무원 인재개발법」또는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.
  - ④ 비상대비교육 참여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시·도 교육청의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는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에 해당한다.
- 문 2.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-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  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된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  - ③ 시·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  - ④ 시장·군수 및 구청장은 시·도지사로부터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
- 문 3.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물자의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-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정부 비축 물자에 대하여 비축을 해제하거나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, 규격, 수량 및 해제ㆍ사용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,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한 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.
  - ② 국무총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정부 비축 및 업체 비축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 · 점검할 수 있으며, 확인 ·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 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.
  -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정부 비축 및 업체 비축 물자의 품목・규격・수량・ 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6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.
- 문 4.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  - ㄱ.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업체, 자원수송업체 및 방위산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ㄴ.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업체의 장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.
  - 다. 행정안전부장관이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.
  - 리.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 · 법원 · 헌법재판소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.

① 7, L

② ㄱ, ㄹ

③ L, C ④ C, 己

문 5.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 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매년 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대상 지정업체에 대한 준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비상대비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.
-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가 도산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의 장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.
- ④ 중점 관리해야 할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하되, 그 업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다.

문 6.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□. 시험제품 생산훈련의 경우 훈련 기간은 연(年) 7일을 초과할 수 있다.
- 나. 훈련 참가자의 인도·인수와 관련하여, 인도·인수관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 중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.
- 다. 시·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시장등과 훈련대상물자의 사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·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·인수하게 할 수도 있다.
- 리. 시·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훈련실시 결과를 보고하되,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.
- ① 7, =

② L, E

③ ∟, ⊏, ㄹ

④ 7, ∟, ⊏, ⊒

- 문 7.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해당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비상대비 훈련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?
  - ①「소방기본법」에 따른 소방대장
  - ② 「초·중등교육법」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학생
  - ③「민방위기본법」에 따라 임명된 민방위대장
  - ④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의 임직원
- 문 8.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으로 인한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- ①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하여 보상하거나 의료지원을 한다.
  - ②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이 훈련이 끝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, 건물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의 과세표준은 시가에 의한다.
  -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련 절차에 따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.
  - ④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의 소속 기관의 장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문 9.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의 실시명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○∼②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- (1)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( ① )이/가 그 훈련의 방법·기간 등에 대하여 ( ① )의 승인을 받아서 발령한다.
- (2) (1)에 따른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은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( © )이/가 ( ② )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.

			<u> </u>
① 행정안전부장관	국무총리	국무총리	대통령
② 국무총리	대통령	시・도지사	행정안전부장관
③ 행정안전부장관	국무총리	시・도지사	행정안전부장관
④ 국무총리	대통령	행정안전부장관	국무총리

## 민방위기본법(시행령 포함)

문 10. 민방위기본법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민방위대에 대한 특별검열을 실시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사태가 광역화되거나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.